

한 식 진 흥 법 시 행 규 칙 안

1. 제안이유

한식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6553호, 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식 및 한식산업 실태조사 내용과 범위 등(안 제2조)

- (1)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국내외 한식당 현황과 운영 실태, 한식 식재료, 한식산업 종사자 등의 교육 등으로 함
- (2)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나.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관리 등(안 제3조)

- (1)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으로 함
- (2) 신청 내용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 (3) 한식진흥원의 장은 연 1회 이상 양성기관의 전년도 교육 시설·장비 현황, 교수 확보 현황, 교육운영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교육운영 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함
- (4)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기준(안 제4조)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절차, 관리 등(안 제5조)

- (1)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메뉴판, 식재료 구매내역 등으로 함
- (2) 신청 내용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하고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 (3)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 (4) 한식진흥원의 장은 해외 우수 한식당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함
- (5)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표시를 해당 한식당 내·외부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음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 예고(2020. 4. 10. ~ 5. 21.)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식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 ①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조에서 “실태조사”라고 한다)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한식당의 현황과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한식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한식산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한식산업 인력 현황(성별을 포함한다)
4. 외국의 음식 문화 및 음식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식 및 한식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은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리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교수·강사 확보 현황
4. 한식 및 한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신청 내용이 「한식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양성기관의 명칭
3. 양성기관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교육 분야·내용

③ 진흥원의 장은 연 1회 이상 양성기관의 전년도 교육시설·장비 현황, 교수·강사 확보 현황, 교육운영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교육운영 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당이 제공하는 음식 및 식재료의 구성, 유형적·무형적 특성이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
2. 현지 위생기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을 것
3. 한식을 조리할 수 있는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한식당의 내·외부, 시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서비스 등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메뉴판
2. 최근 6개월간 식재료 구매내역
3. 상주인력 이력서 및 증빙 자료
4. 최근 2년간 해당 국가의 위생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진흥원의 장은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때에는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신청 내용이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의 장은 해외 우수 한식당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⑥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받은 한식당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시를 해당 한식당 내·외부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기관·단체 소재지			
교육 분야·내용			

「한식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	-----	------	------

신청인	업소(기업)명	사업자 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및 국적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연락처

한식당 소재지

「한식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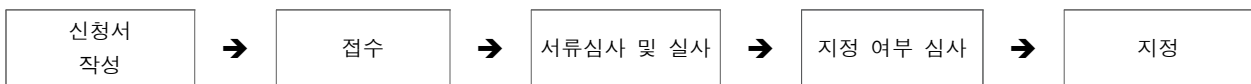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한식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메뉴판 2. 최근 6개월간 식재료 구매내역 3. 상주인력 이력서 및 증빙 자료 4. 최근 2년간 해당 국가의 위생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한식진흥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지정번호	
업소명	
대표자 성명	
한식당 소재지	

「한식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Certificate of Excellent Korean Restaurant

Certification No.	
Name of Restaurant	
Name of Representative	
Address	

In line with Article 15 of the Act on Korean Food Promotion, We,
hereby, certify the Excellent Korean Restaurant.

YY / MM / DD

Declared by (signature or stamp)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백상지 150g/㎡]